

필립스 전기면도기 등 핵심제품의 인터넷오픈마켓 할인판매가격 제한 + 위반한 대리점에 제품공급제한은 재판매가격 유지 불공정거래행위 + 과징금부과 적법: 대법원 2017. 6.

19. 선고 2013두17435 판결



1. 사실관계

필립스에서 전기면도기 등 특정 품목은 할인판매용으로 인터넷 오픈마켓에 공급하는 것을 금지 + 위반한 대리점에 대하여 출고정지·공급가격 인상 등의 제재함. 인터넷 오픈마켓에 공급할 수 있는 가전제품에 대해서도 권장소비자가격의 50% 이상 가격으로 판매하여야 한다는 가격정책 수립 + 위반한 대리점들에 대하여 출고정지, 공급가격 인상 등으로 제재함.

2. 불공정거래행위 해당

공정거래법 제29조 제1항 "사업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" + 제2조 제6호 "재판매가격유지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규약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"

3. 과징금 부과 + 고위 임원의 위법행위 가중

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'위반사업자의 이사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 고위 임원(등 기부 등재 여부를 불문한다)이 위반행위 직접 관여한 경우'에는 10% 이내의 범위에서 과징금은 가중할 수 있습니다(공정거래법 시행령 별표 2).

고위 임원이 단순히 위반행위에 관한 보고를 받고 이를 제지하지 않는 등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차원을 넘어서 위반행위를 주도, 계획하는 등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 과징금 산정에서 가중사유에 해당합니다. 대법원은 이 사안에서 고위 임원의 직접 관여행위

가 있었으므로 과징금 산정에서 가중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.

판결문 중 해당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.

(3) 원심은,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, ① 이 사건 각 행위가 대리점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제한하고 인터넷 오픈마켓에서의 상표 내 경쟁을 제한·차단함으로써 전체 시장에서의 경쟁 및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효과가 큰 점 등에 비추어, 피고가 이 사건 각 위반행위를 '매우 중대한 위반행위'로 평가한 것이 위법하지 않고, ② 또한 원고의 소비자라이프스타일 사업부 책임자로서 비등기 임원인 G 전무가 이 사건 각 행위를 논의한 온라인 TF를 주도하는 등 함으로써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하였으므로, 피고가 이 사건 고시조항에 기하여 과징금을 가중한 것 역시 부당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,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·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.

첨부: 대법원 2017. 6. 19. 선고 2013두17435 판결

Global 기업법무, 공정거래, 준법경영, 조사대응, CP, 손해배상, 행정소송, Claim, License

T. 02-591-0657 E. kkh@kasanlaw.com H. www.kasanlaw.com